

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류제출 목록(샛별초)

자료입력 및 제출기간	2026. 1. 20.(화) 09:00 - 1. 23.(금) 16:00	
제출서류	대상자 및 증빙	방법
[필수]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PDF	전교직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하여 나이스 업로드 후 원본파일 제출 (소통메신저 또는 메일)	[메뉴] 국세청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) →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→ 인증서 로그인 → 귀속년도(2025년) → 근무한 월 모두 선택 →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부터 장애인증명서까지 모두 돋보기 클릭(해당 세액공제 아래 기본공제 대상자에만 체크) → 개인정보 '공개함' / 비밀번호 '설정안함' → '내려받기' → 전체선택 → PDF로 내려받기 → 나이스 업로드 ▶ PDF파일 제출 ① 소통메신저(이지원) ② 이메일(ezone@korea.kr)
[필수] 소득공제신고서	전교직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	[메뉴] NEIS → 기본 메뉴 → 연말정산 → 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→ [소득공제신고서] 탭 → 귀속년도(2025년) → 조회 ▶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
[필수] 주민등록등본	전교직원 세대주 여부 및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용 반드시 제출	정부24 http://www.gov.kr ▶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포함
기부금공제 명세서	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	[메뉴] NEIS → 기본메뉴 → 연말정산 → 나의 기부금명세서 → 귀속연도(2025년) →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▶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기부금영수증 제출
연금저축공제, 월세명세서	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	[메뉴] NEIS → 기본메뉴 → 연말정산 → 나의 연금저축공제명세서 → 귀속연도(2025년) →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▶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증빙서류 제출 [메뉴] NEIS → 기본메뉴 → 연말정산 → 나의 월세명세서 → 귀속연도(2025년) →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▶ 증빙서류(계약서, 이체내역서) 제출
의료비지급 명세서	해당자 나이스 출력물에 본인 서명하여 제출	[메뉴] NEIS → 기본메뉴 → 연말정산 → 나의 의료비지급명세서 → 귀속연도(2025년) → 조회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▶ 홈택스에 없는 내역은 영수증 제출
가족관계증명서	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(등본으로 확인불가시)	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://efamily.scourt.go.kr

※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, 기부금,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2025년 귀속 연말정산 유의사항

1.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오픈: 2026. 1. 15.(목)

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정: 2026. 1. 20.(화)

자료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반드시 확정일 이후 PDF자료를 다운받으셔야 합니다.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선택 시 근무한 월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
(2025. 3월 신규발령이고 경력이 없을 시 2025. 3월~2025. 12월 자료만 체크하여 다운로드)

※ 2025년 중 다른 곳에서 근무한 경우 중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세요.

(신규임용 전 기간제교사·사기업 근무한 경우 등이며 임용 후의 관내/관외전보는 해당없음)

2. 홈택스 간소화서비스 이용 유의사항

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(홈택스에서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)

- 배우자 및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신청하실 때는, 해당 부양가족의 연금, 이자, 양도, 퇴직, 사업, 배당, 부동산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)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본인이 부양가족, 경로우대, 장애인, 자녀세액공제, 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신청한 경우, 형제자매 등의 다른 근로소득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
-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(소득·나이제한 없음)을 위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. (해당 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 경우 공제불가)
-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반드시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.
※ 본인의 보장성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나이스에 업로드 후 해당 금액으로 수정
- 주택자금/청약 등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등 요건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공제여부를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

②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
-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 본인이 발급기관을 통해 소득/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며, 나이스에 추가입력 후 반드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 (허위발급 영수증으로 인한 가산세 등은 소득자 본인의 책임)
-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일련번호와 법인설립허가증·소속증명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의료비영수증(안경)의 경우 영수증에 시력교정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※ (붙임4)연말정산 추가 증빙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③ 부양가족 자료 조회는 가족 본인의 사전동의 필요

- 가족(직계존비속)이 동의하면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능하며, 19세 미만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[자녀자료 조회 신청] 후 조회가능

3. 기한 내 연말정산 서류 미제출 시 나이스에 입력된 급여자료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며, 근로소득공제

이외의 소득/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2026.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.

연말정산 자료는 소득자 본인이 공제가능여부 확인 후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며,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 발생 시에는 소득자 본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.

4. 세법관련 상담 및 정확한 공제가능여부는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☎126)

(참고) <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>